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제58호 번호

제출연월일 2005. 9. 28. 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소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조정(안 제2조)
 - 소액 부징수 기준 (건당) : 600원 ⇒ 2,000원
 -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: 인근 유사토지의 농지소득금액의 5/100 ⇒ 토지가격의 1/100
- 나. 소하천점용허가수수료 징수규정 신설(안 제3조제3항)
- 다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(안 제1조ㆍ제3조ㆍ제5조 등)
 -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⇒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
 - 토석·사력 ⇒ 토석·모래·자갈
 - 월할 계산 ⇒ 매 1월을 1/12년
- 라.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점용료 감면기준 보완(안 제3조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기획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 · 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2005. 8. 18 ~9. 7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

제1조중 "소하천정비법"을 "「소하천정비법」"으로 하고, "토석·사력"을 "토석·모래·자갈"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"600원"을 "2,000원"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중 "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"을 "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」 제3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항중 "제10조제2항"을 "제9조제2항"으로, 같은조 제3항중 "월할계산"을 "매 1월을 1/12년으로"로, "일할계산"을 "매 1일을 1/365년으로"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점용료 등의 감면) ①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.

- 1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: 100퍼센트
- 2.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: 100퍼센트
- 3. 국가 및 사천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: 100퍼센트
- 4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: 100퍼센트
- 5.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: 100퍼센트
- 6.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: 100퍼센트

- 7.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로로 점용하는 경우: 100퍼센트
- 8.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: 100퍼센트
- 9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·전기통신시설·송유관·가스공급시설·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: 50퍼센트
- ②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.
 - 1.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 장이 인정하는 경우: 100퍼센트
 - 2.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: 50퍼센트
 - 3.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 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: 30퍼센트
- 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「하천법 시행규칙」 제32조를 준용하며,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제1항과 같다.
- 제4조제1항 단서중 "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"를 삭제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.
-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유수사용, 토지의 점용, 토석·모래·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

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.

-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7조중 "토석·사력"을 "토석·모래·자갈"로 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- 별표 1의 제2호 산정 기준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란 다목중 "토석·사력"을 "토석·모래·자갈"로 하며, 같은표중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표 제7호 구분란중 "토석·사력"을 "토석·모래·자갈"로 한다. 가.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

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/100

별표 2를 삭제 한다.

별표 3의 500퍼센트 이상란의 납부할 점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년도 점용료 + [전년도 점용료 × {25/100 + (증가율 - 500/100) × 5/1000}]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(이하"법"이 라 한다)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	
토지의 점용료, <u>토석·사력</u> 등 소하천 산출물 의 채취료,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(이하"점용	<u>토석 · 모래 · 자갈</u>
료등"이라 한다)의 부과・징수에 관한 사항	
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점용료등의 산정기준) ①점용료 등의 산	
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1건의 점용료 등이 <u>600원</u>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	
	② <u>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</u>
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	
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<u>제10조제2항</u> 의 규정 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	
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.	
③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<u>월할 계산</u> 하	
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	
<u>일할 계산</u> 한다. ④ (생략)	 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 제3조(점용료등의 감면) 법 제22조제4항의 규	⑤ (현행과 같음) 제3조()①
정에 <u>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</u> 같다.	

업으로 전기공급시설・전기통신시설・송유 관・가스공급시설・열 수송시설 등을 설치하 는 사업을 위한 경우: 50퍼센트 (2) 설>	현 행	개 정 안
1. 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80퍼 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 우: 100퍼센트	<u> </u>	2.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: 100퍼센트 3. 국가 및 사천시장(이하"시장"이하 한다)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: 100퍼센트 4.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: 100퍼센트 5.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: 100퍼센트 6.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: 100퍼센트 7.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로 점용하는 경우: 100퍼센트 8.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: 100퍼센트 9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・전기통신시설・송유관・가스공급시설・열 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: 50퍼센트 2개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. 1. 재해로 인하여 전・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

현 행	개 정 안
	2. 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: 50페센트 3. 재해로 인하여 전·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시장이 인정하는 경우: 30퍼센트
<u><신 설></u>	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 는 하천법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하며, 법 제 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 은 제1항과 같다.
제4조(점용료등의 조정) 소하천을 계속하여 2	제 <u>4</u> 조() ①
개연도이상 점·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	
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	
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	
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	
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<u>별표 3</u> 의	
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	
로 한다. <u>다만,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</u>	·
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	<u>니하다.</u>
지 아니하다. <신 설>	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
	준용한다. 이 경우 점용료등은 부당이득금으
	로 본다.
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시기) ① (생 략)	<u></u> 제 <u>5조(</u>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토석·사력</u>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	②유수사용,토지의 점용,토석·모래·자갈 등
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 <u>이거나,</u>	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
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	기간이 6월 이상 <u>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50</u>
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<u>시장이 정하는 바</u>	<u>만원을 초과할</u>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
<u>에</u> 의하여 점용료등을 <u>분납</u> 하게 할 수 있다.	하고 점용료등을 <u>분할 납부</u> 하게 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 <u>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, 기</u>	의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 고 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제6조 (현행과 같음) 답 제7조(

[별표 1]

《 현 행 》

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(제2조 관련)

구 분	산 정 기 준
1. 공작물 설치(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.)	(생략)
2. 토지(소하천 등 부지)의 점용	가.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토지 농지소득금액의 5/100 다만, 미 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.8/100 나. (생략)
	다. 광업(골재채취를 제외)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 다만, 소하천구역내의 <u>토석·사력</u>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. 라. (생략)
	마. (생략)
	바. (생략)
	사. (생략)
3. 하천부속물의 점용	(생략)

구 분	산 정 기 준
4. 유수의 점용	(생략)
5. 지하수의 유수 채취	(생략)
6. 배수(주수)	 가.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/3 ※ 월 10,000㎡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 나.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,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(주수)는 제외한다. 제4호 나목의 1/4 ※ 월 10,000㎡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7. <u>토석·사력</u> 의 채취	가. 도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<u>토석·사력</u> <u>도내</u> 가격의 평균치의 15/100 나. (생략)

구 분		산	정	기	준
	다. (생략)				
8. 죽목, 갈대,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	(생략)				
9. 스케이트장, 유선장(유 선의 모선을 포함한 다) 풀장, 대기장, 탈 의장(매장포함)	(생략)				
10. 기타의 점용 및 사용	(생략)				

[별표 1]

《개 정 안》

점용료 등 산정기준표(제2조 관련)

구	분	산 정 기 준
1. (현행과 같	<u>야</u>)	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	<u>야</u>)	가 <u>토지가격의 1/100</u>
		나. (현행과 같음)
		다
		<u>토석·모래·자갈</u>
		라. (현행과 같음)
		마. (현행과 같음)
		바. (현행과 같음)
		사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-	승)	(현행과 같음)

구 분	산 정 기 준
4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5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6. <삭 제>	<삭 제>
7. <u>토석·모래·자갈</u> 의 채취	가 <u>토석·모래·자갈</u> <u>도매</u> 나. (현행과 같음)

구 분		산	정	7]	준
	다. (현행과	같음)			
8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
0 (청체기 가 0)	/처케미 기·(5 \			
9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	글)			
10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

[별표 2] < 삭 제 >

점용료 등 감면기준(제3조와 관련)

감 면 대 상	감 면 율
1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	100%
2.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	100%
관리를 위한 경우	
3. 국가 및 시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	100%
경우	
4.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	100%
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	
5.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	100%
점용의 경우	
6.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	100%
7.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	100%
8.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	100%
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	
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	
장이 인정하는 경우	

[별표 3] 《현 행》 점용료 등 조정산식 (제4조와 관련)

산출점용료 등의 증가율	납부할 점용료
(생략)	(생략)
500퍼센트 이상	전년도 점용료 + [전년도점용료× 25/100]

[별표 2] 《개 정 안》 점용료 등 조정산식 (제4조와 관련)

산출점용료 등의 증가율	납부할 점용료
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500퍼센트 이상	전년도 점용료+ [전년도점용료× {25/100+ (증가율 - 500/100) × 5/1000}]

관계법령 발췌

◆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
제3조 (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·평가 및 공시)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·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·평가하고,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·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 (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) ①국가·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- 1.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·사용에 대한 보상
- 2. 국·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
- 3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

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(이하 "토지가격비준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,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.

◈ 河川法 施行規則

제32조 (허가수수료)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04.11.29>

[별표 4]

허가수수료의 기준(제32조관련)

사 항 별	수 수 료 액
1.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 유지·관 리에 관한 허가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
2.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가. 공작물의 신축. 개축. 변경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 를 제외한다)의 1/1,000
나. 토지의 굴착. 성토.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 를 제외한다)의 1/1,000
다. 유수의 사용,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.모래.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	점용료의 1/1,000
라. 토지의 점용, 스케이트장, 유선장의 설치, 식물의 재식 및 선박의 운항	없음
3.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가.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
나. 토지의 굴착.성토.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	를 제외한다)의 1/1,000 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 를 제외한다)의 1/1,000
다. 죽목의 재식	없음
4. 국가.지방자치단체.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를 받는 경우	없음

◆ 小河川整備法

第18條 (公益을 위한 처분) ①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.

- 1. 小河川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2. 小河川의 보전 및 災害豫防 등 公益에 대한 被害를 제거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公益事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
- ②삭제 <1997.12.13>

第22條 (占用料등의 徵收) ①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流水 및 土地의 占用料, 土石·모래·자갈 등 小河川産出物의 採取料 등(이하 "占用料등"이라한다)을 徵收할 수 있다. 다만,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한 者로부터 당해 占用料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不當利得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. 다만,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
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管理廳은 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경우에 그 工事 또는 그 占用·사용이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것일 때에는 占用料등 또는 許可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.
-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不當利得金 및 許可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하며, <u>그 금액과 徵收方法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과</u> 許可手數料의 減免對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◆ 地方稅法

제197조 (정의) 이 절에서 "농업소득"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(이하 이절에서 "작물"이라 한다)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.[전문개정 2000.12.29]